

- 나. 경제협력에 관한 활동, 정책, 관행 및 법령에 관한 정보교환
- 다. 일반 또는 특정주제에 관한 정부관리, 업체대표 또는 기타 관심있는 개인 및 집단의 방문 및 교환
- 라. 합의된 협력사업 및 계획의 이행
- 마. 상호 합의에 따른 기타 형태의 협력활동

(2) 이 양해각서의 협력활동을 위한 비용은 상호 합의에 따라 부담한다.

### 제 3 조

이 양해각서에 따른 특정협력활동의 세부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은 양국 정부 또는 그 기관중 적절한 당사자간에 체결할 수 있다.

### 제 4 조

이 양해각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은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,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- 가. 경제, 산업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교환
- 나. 이 양해각서의 협력활동 및 실적의 검토
- 다. 이 양해각서의 이행 및 양해각서하의 협력활동의 추진방향에 관한 당사국에의 조언

### 제 5 조

(1)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일명의 고위대표와, 적절한 경우, 기타 대표들로 구성한다.

(2)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업무준비를 위하여 일명의 간사를 임명한다.